제2988호
2023. 3. 27.

발 행 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편 집 인 : 홍 보 담 담 관 주 재 봉
전화 : 3396-4957
(http://www.junggu.seoul.kr)

선람	기관의장

구 보

◉ 자치법규

[조 례]

제1692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2
제1693호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7
제1694호 :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26
제1695호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 29
제1696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33
제1697호 :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35
제1698호 :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7
제1699호 :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2
제1700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4
제1701호 :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 46

[규 칙]

제767호 :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49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서울특별시중구

자 치 법 규

[조 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92호

서울특별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답례품

제2조(답례품의 종류) ①「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
2. 서울중구사랑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구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3. 구의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장애인 단체 등 사회적 경제 주체의 생산품
4. 그 밖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3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품질,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실적 및 매출액
4.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답례품 제공 비용)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영 제5조제1항의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제2항 및 법 제9조에 따른 답례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3조의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 업무 관련 국장이 된다.

1. 고향사랑기부 업무 부서장

2. 지역특산품 및 기념품 선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상품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3장 고향사랑기금

제6조(기금의 조성)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구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제공 및 그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5.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및 위원회 수당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
   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하며,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17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 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8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기금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 ①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서류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3. 제20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구청장은 법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2023.1.1.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제1조)

○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 운영 등 (제2조 ~ 제5조)

○ 고향사랑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 (제6조 ~ 제10조)

○ 고향사랑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제11조 ~ 제2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93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장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3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을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로, “사람은”을 “외국인은”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생년월일(성별)·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성별)”을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생년월일(성별)”을 “생년월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중구 소속 공무원
2.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중구의회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종전의 제16조)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 ] 신청 [ ]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서울특별시 중구　○ ○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중구 ○○동(○책중 ○권) 란에는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주 민 투 표 청 구 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구의 책무) ① ~ ③ (생 략)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구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외국인 ----------.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 자치구 및 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구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의 복리 ·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삭 제>

현 행	개 정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생년월일(성별)·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성별),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성별)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② ---------- 생년월일을 ----------.

현 행	개 정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투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중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중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중구의회 의원 3.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중구 소속 공무원 2.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중구의회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현 행	개 정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과장이, 서기는 담당주사가 된다. ⑨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 ⑩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한다. ⑪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⑫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 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⑬ 이 조례에 따른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현 행	개 정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심의회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신 설>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 제15조 (생 략)	제17조 ~ 제19조 (현행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구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20조(공표방법 등) ----------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현 행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개 정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 ]신청 [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현 행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개 정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현 행

[별지 제5호서식]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서울특별시 중구 및 ○○동(○ 책중 ○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한다.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한다.
4.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한다.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 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한다.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한다.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한다.

개 정

[별지 제5호서식]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서울특별시 중구　○ ○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중구 ○○동(○책중 ○권) 란에는 통·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현 행

[별지 제6호서식]

주 민 투 표 청 구 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개 정

[별지 제6호서식]

주 민 투 표 청 구 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현 행	개 정
[별지 제8호서식]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의안의 표지	<삭 제>
[별지 제9호서식] 주민투표청구심의회 회의록	<삭 제>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을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제2조, 제8조, 제9조)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제3조)

○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제4조)

○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제8조, 제10조)

○ 통·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내용 추가(제8조)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제12조 ~ 제16조)

○ 성별 기재사항 삭제 (제12조~제16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94호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의2제5항”을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비밀유지)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7조제5항----------.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
제4조(통장의 임기)	<삭제>
제4조의2(반장의 임기)	<삭제>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 ⑤ (생략)	<삭제>
제5조의2(통장추천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 ⑤ (생략)	<삭제>
제6조(명예반장) ① ~ ② (생략)	<삭제>
<신설>	제7조2(비밀유지)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 규칙으로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통장 임명권자를 변경하고, 통 명칭과 구역 조정권자 변경 등으로 효율적인 통·반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거조항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서 제7조제5항으로 개정(제1조)

○ 통의 명칭과 구역의 지정을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개정(제3조)

○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제4조~제6조 각각 삭제(제4조~제6조)

○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 유출 및 이용 금지 조항 신설(제7조의2)

○ 시행세칙에서 시행규칙 제정으로 개정(제12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95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공무원의 신분증”을 “공무원증”으로, “「공무원증 규칙」”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제3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1항 중 “10일”을 “15일”로, “20일”을 “25일”로 한다.
제24조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유·사산	배우자	1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복장 및 제복) ① ~ ② (생 략)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복장 및 제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증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4조(특별휴가) (생 략) ① (생 략)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의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⑤ (생 략) ⑨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24조(특별휴가)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④~⑤ (현행과 같음) <삭 제> ⑪ ----------15일,----------25일----------. ⑫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	결혼	본인	5
	자녀	1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출산	배우자	10
	<신 설>	<신 설>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입양	본인	20
<신 설>	<신 설>	<신 설>	유·사산	배우자	1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비고 : (생 략)			*비고 : (현행과 같음)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공무원 노조 단체 협약(23.1.2.) 사항 반영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

2. 주요내용

구 분	조 항	내 용	비 고
단체 협약	제24조1항	<별표3>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신설) 자녀 또는 배우자 출산 시 **1일** (신설) 배우자 유· 사산 시 **1일** (개정)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시 2일 → **3일** (개정)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3일 → **5일**	특별 휴가
	제24조11항	장기재직 휴가 일수 개정 10년 ~ 20년 미만 : 10일 → **15일** 20년 ~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 20일 → **25일**	
	제24조12항	(신설) 군 자녀 입영 휴가(1일)	
상위법 개정	제12조3항	「공무원증 규칙」 폐지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으로 개정	
	제24조2항	출산 후 휴가가 45일 이상이 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삭제	특별 휴가
	제24조3항	여성보건휴가 사용 조건이 개정됨에 따라 삭제	
	제24조9항	재해구호휴가 사용 조건과 일수가 최대 10일로 개정됨에 따라 삭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96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72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 칙<2019.11.8. 조례 제1472호>	부 칙<2019.11.8. 조례 제1472호>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2조(유효기간) ---------- **2025년 12월 31일까지**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감면)에 따라 일몰 규정을 정비

2. 주요내용

○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부칙 제2조)

- “2022년 12월 31일” → “2025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97호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적 교육격차 해소 및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를 활성화 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단체”라 함은 청소년 활동 육성 및 교육프로그램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3. “인재육성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 거주 학생의 학력증진 및 진로지원을 위하여 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 및 비교과 과정에 대한 보완사업
   나. 관내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녀교육, 입시정보제공 등의 프로그램
4. “초·중·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정규교과과정”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과정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인재육성 지원)

① 구청장은 인재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재육성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인재육성 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 등) ① 인재육성 지원사업은 관내에 거주하는 초 · 중 · 고등학교 재학생 및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② 인재육성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정규 교과과정(국어, 사회, 수학, 과학, 외국어, 한국사 등)과 연계된 학습 지원 사업의 온·오프라인 강의료 또는 수강료 및 재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2.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진로, 진학, 상담 관련 교육지원 사업의 온·오프라인 강의료 및 재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3. 자녀교육 및 입시정보 관련 지원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재육성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사람이 돌아오는 교육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 구청장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제3조～제4조)

○ 인재 육성지원 및 지원사업 대상 및 범위 등(제5조～제6조)

○ 시행규칙(제7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98호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 ·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 · 제139조 · 제144조"를 "「지방자치법」 제153조 · 제156조 · 제161조"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문화 · 체육시설내"를 "문화 · 체육시설 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9조 단서 중 "타시 · 구민"을 "타 시 · 구민"으로 한다.
제1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료의10%"를 "사용료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1~4일전"을 각각 "1~4일 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후단 중 "100분의15"를 "100분의 15"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80범위"를 "80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제12조제3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제12조제4항 중 "제11조 제2항"을 "제11조제2항"으로 하며, 제12조제5항 중 "20범위내"를 "20 범위"로 한다.
제15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 제139조 · 제144조,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도서관법」 제27조 · 제29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문화활동 및 건강 ·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문화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53조 · 제156조 · 제161조----------.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 ② (생 략)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문화 · 체육시설의 관리 ·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3년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③ ---------- 범위----------.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③ (생 략)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문화 · 체육시설내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필요한 부대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설물에 훼손이 가는 부대설비는 설치할 수 없다.	④ ---------- 문화 · 체육시설√내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문화 · 체육시설의 관리 ·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지원) ①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문화 ·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문화 ·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공공의 행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문화 ·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용기회 부여는 중구민을 타시 · 구민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문화 ·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 ---------- 타√시 · 구민----------.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는 자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제4조에 따른 관리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와 위약금(총 사용료의10%)을 반환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나열된 태풍, 홍수, 화재, 감염병 등과 같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 발생 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제11조의2(사용료의 반환) ① ---------- 사용료의√100분의 10----------. ----------
1.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는 자의 강습 및 이용 신청 취소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사용예정일 1~4일전 : 위약금 공제 후 반환	나. ------- 1~4일√전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제4조에 따른 관리 및 운영자의 강습 및 이용 취소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사용예정일 1~4일전 : 전액반환 및 위약금 배상	나. ------- 1~4일√전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3.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는 자의 대관 취소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사용예정일 1~4일전 : 위약금 공제 후 반환	나. ------- 1~4일√전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	② ----------

현 행	개 정 안
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사용료에 연 100분의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나열된 태풍, 홍수, 화재, 감염병 등과 같은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 발생 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 ---------- 100분의√15---------- ----------. ----------
제12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생 략)	제12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설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② ---------- 80√범위----------.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58조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현 행	개 정 안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신 설>	9.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9. ~ 12. (생 략)	10. ~ 13. (현행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④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중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1조제2항----------.
⑤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중구민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0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⑤ ---------- 20√범위----------.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 필요한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해당하는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 등록 시 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에 준한 공공서비스 감면 혜택 부여

○ 그 밖에 「지방자치법」 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 (제12조제3항제9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699호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지원기준) ① 출산양육지원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별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기준 (제3조관련)

(단위 : 원)

구 분	지원내역	비 고
첫째 아이	1,000,000	
둘째 아이	2,000,000	
셋째 아이	3,000,000	
넷째 아이	5,000,000	
다섯째 아이 이상	10,000,000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기준) ① 출산양육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3조(지원기준) ① 출산양육지원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별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기준 (제3조관련) (단위 : 원)	[별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기준 (제3조관련) (단위 : 원)

구 분	지원내역	비 고
첫째 아이	200,000	
둘째 아이	1,000,000	
셋째 아이	2,000,000	
넷째 아이	3,000,000	
다섯째 아이 이상	5,000,000	

구 분	지원내역	비 고
첫째 아이	1,000,000	
둘째 아이	2,000,000	
셋째 아이	3,000,000	
넷째 아이	5,000,000	
다섯째 아이 이상	10,000,000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최근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사회진입 및 1가정 1인 출산율 추세에 맞춰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양육지원금 확대지원으로 생애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생순위별 출산양육지원금 차등 지원확대 및 최대 1,000만원 지원

구 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이상
현 행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개 정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 지원기준
   1) 12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 아동의 부모
   2) 12개월 미만 거주자는 거주기간이 12개월 이상이 된 후에 지원
   ○ 적용기준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 2023년 1월 1일 이전 출생한 신생아는 종전기준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00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중구청장"을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안의 제출 · 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 · 제안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제안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기) ① (생 략)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3조(회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신 설>	제6조(의안의 제출 · 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 · 제안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제안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6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행 2022. 1. 13.)으로 의원의 의안 발의 정족수를 지방의회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의안 발의 정족수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의 의안 발의 정족수 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701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후단에“다만,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를 신설한다.

제21조제3항 중 “매 생리기 외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를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로 한다.

제21조제8항 중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10일”을 “15일”로, “20일”을 “25일”로 각각 변경한다.

제21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제9항에“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를 신설한다.

별표 3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유·사산	배우자	1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특별휴가) ②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1조(특별휴가) ② ---------- 다만,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 외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의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⑧ ---------- 15일, ---------- 25일 ----------.
⑨ 그 밖에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⑨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신 설> ※ ⑨항을 ⑩항으로 변경	⑩ 그 밖에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별표3】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1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신 설>	<신 설>
입양	본인	20
<신 설>	<신 설>	<신 설>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비고 : (생 략)

【별표3】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1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유·사산	배우자	1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비고 : (생 략)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중구청-중구청 공무원노조 간 단체 협약(2023. 1. 2.) 체결에 따라, 이를 준용하여 중구의회 소속 직원 등의 복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무원 노조 단체 협약(2023. 1. 2.) 사항 반영
- 장기재직 및 군 입영 자녀 휴가 일수 개정(제21조)
- 경조사별 휴가 일수 개정(별표3)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정비(제21조)
- 출산 후 휴가가 45일 이상이 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한 임신검진휴가 신설

[규 칙]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67호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장 및 반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 종료 후 새로운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연임할 수 있다.

②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통장 및 반장의 임명·해임) 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개모집하고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장이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발굴하여 추천한다.

1. 해당 통의 관할 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다만, 신설 통인 경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요하지 않음)
2.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③ 반장은 그 반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④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1. 통장은 통 관할지역 반장은 반 관할지역 이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심신장애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대통령,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및 선출직에 출마하는 특정인의 당선지지를 위한 홍보, 연락, 유인물 배부, 물품전달, 업무보조 등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경우
6.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명예반장) ①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원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임명한다.

제5조(통장 모집 공고) ① 통장 모집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해당 통 주요 통행로 2개소 이상에 공고하며, 3년의 통장 임기가 만료하여 모집할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② 공고기간은 7일 이상(토·일·공휴일 포함)으로 한다.

제6조(통장후보자 신청)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기간 중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통장심사위원회 구성) ① 동장은 통장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동 단위별 비상설기구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동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등 해당 동 주민 중에서 덕망과 신임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종료 시 자동 해산한다.

제8조(통장심사위원회 운영) ①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사표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통장으로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통장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평균 60점 이상일 때 임명한다.

③ 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심사대상의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보고) 동장은 통장 및 반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중구 ○○동 공고 제 - 호

통장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동 ○○통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 대상 통
- ○ 통 명: ○○동 ○○통
- ○ 관할구역:

☐ 접수 기간:

☐ 통장신청 자격요건
- ○ 해당 통의 관할 구역 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신설되는 통의 경우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 ○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이며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 제출 서류
- ○ 신청서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 ○ 자기소개서 1부 (지원동기, 경력 등)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접수 및 문의: ○○동 주민센터(☎)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 ○○동장

[별지 제2호서식]

통장후보자 신청서

본인은 ____동 제____통장 후보자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동	통장

신 청 자	한글		생년월일 (연령)	- - (만 세)	사 진 6개월이내 천연색사진 (3×4㎝)
	한자		성 별	남 / 여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해 당 통 전 입 일	년 월 일 ~ 현재까지 (년 개월) ※ 가장 최근 전입일 기준				
연 락 처	휴대폰	010 - -	자 택	02 - -	
	전자우편(E-mail)				
직 업			직 위		

위와 같이 중구____동 제____통장 후보자로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성명 : (서명)

서울특별시 중구 ____동장 귀하

※ 첨부서류 :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각 1부.

□ 자기소개서

ㅁ *본인소개, 지원동기, 통장 선출 시 봉사계획 등*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통장 심사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등 필요 사항에 대한 열람·발급에 동의하고 제출한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또한 통장 심사 결과 및 이후 위 기재 사항의 허위로 인하여 해임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서약자 : (서명)

서울특별시 중구 _____동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중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준수하며, 고지 후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외의 용도로는 절대 수집·이용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른 중구 통장후보자 자격확인 및 심사	
수집·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휴대폰·자택·전자우편), 직업, 직위, 약력(주요경력·봉사활동내역 등)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위에 설명된 이용목적을 위하여 수집·이용되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후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개인정보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즉시 파기됩니다.	

2.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통장으로 임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주체에게 각종 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별지 제3호서식]

통장후보자 심사표

□ 심사일시 : 20 . . .

□ 심사장소 :

□ 평가방법 :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

□ 통장후보자 (　　동 제　　통)

성 명		성 별	남/여	생년월일	- -	연락처	자 택)
주 소	도로명주소)						휴대폰)

□ 심사항목

평가 항목	세부 사항	배 점	점 수
신 뢰 도	• 관내 거주기간 • 추천내용 • 반장 및 인근주민의 덕망과 신임도 등	20	
업무수행능력	• 통장 지원동기 및 목적 • 사회경력 • 원활한 업무수행가능 여부 등	30	
행정관심도 및 참여도	• 구 동정사업 참여 및 기여도 • 직능단체 참여도 등 • 반장 경력 유무	30	
봉 사 자 세	• 봉사활동 참여(봉사기간, 봉사내용) • 표창 수상 여부 등 • 대민봉사에 대한 긍정적 사고 등	20	
총 점			

20 년 월 일

OOO동 통장심사위원 성 명 (서명)

※ 각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 및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수정할 수 있음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반장의 임기, 임명과 해임에 관한 규정(제2조~제4조)

○ 통장 모집공고와 통장후보자 신청 세부사항 규정(제5조~제6조)

○ 통장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정(제7조~제8조)

○ 통·반장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보고 규정(제9조)

○ 통·반장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서식 규정(별지제1호~별지제3호)